

「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8월 24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7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위생과장 장재석)

가. 제안이유

-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변화로 각종 난치성 질병 발병율이 높을 것이라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높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불만감 해소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변영향지역의 지원(안 제6조의2)
 -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
 -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규정
 - 건강검진 · 교육 및 홍보
 -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변화로 각종 난치성 질병 발병율이 높을 것이라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높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.
- 군수가 관련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 건강검진, 교육 및 홍보,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.
-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”을 “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위하여”를 “지원하기 위하여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강검진
2. 교육 및 홍보
3.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